

춘천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19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김수현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8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황태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C에게 2016. 6. 9. 100,000,000원을 이율 연 4.47%, 연체이율 연 12%, 3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9.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8786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1)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 15호증, 을 제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 F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7. 9. 29.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424,483,743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 160,105,000원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공시지가 264,378,743원), 유체동산 77,000,000원,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대한 채권 1,402,498원,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 28,360,125원, 합계 531,246,366원인 사실, C의 소극재산은 E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0,000,000원,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67,148,459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36,000,000원,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I조합에 대한 채무 644,8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13,848,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69,250,000원, 합계 1,541,046,45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531,246,366원(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2020. 6. 10. 기준 감정가 383,400,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754,541,366원), 소극재산이 1,541,046,459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C의 사해행위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가 피고로부터 2015. 4. 1.경부터 2016. 3. 16.경까지 합계 370,8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21.까지 그중 119,000,000원을 변제한 이후 피고로부터 황태를 계속 공급받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 갱생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담보제공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C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2017. 9.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 아니고 2016. 3. 16.경까지의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설정에 불과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사해의사

- (1) 피고는 C의 거래처에 불과하여 C의 자력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2,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138,0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8. 8.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차전361 지급명령이 2017. 8. 25. 확정된 점, ② 피고는 2017. 9. 15. 청구금액을 대여금 24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합29)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친 점, ③ 피고는 그로부터 2주 후인 2017. 9. 29. 채권최고액 498,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④ 피고는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C가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잔존채무까지 합산한 피담보채권액 353,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8,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8. 7. 6. C에게 ‘귀하는 2017. 9. 29. 채무 242,000,000원을 2차에 나누어 갚겠다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객관적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 498,0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원상회복의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윤이나